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과 보험법의 체계화 방안

송 호 신*

<차례> _____

I. 서 론	IV. 보험법상 보험사기 관련 규정의 입법화
II.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과 계속적인 개정 요구	V.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내용별 입법 검토
III. 보험사기 관련법 체계화의 필요성	VI. 결 론

주제어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보험법, 최대선의의 원칙,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자료제공요청권, 보험사기죄, 가중처벌, 입원적정성심사, 금융위원회

<국문초록> 지난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법률 제14123호)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리고 보험계약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손실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입법되었다. 그런데 동법이 시행되고 4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도 보험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의 조사와 방지 및 처벌이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이 비판받으며, 동 법률의 개정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국회에 총 12건의 동 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들 개정안의 사항들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의 효율성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들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규정들은 보험계약의 일반법인 보험법의 관계에서 법체계적으로 균형있고 적합한 입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에 대한 기본법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보험사기에 관련된 각종 제도들과 규정들을 모두 입법화하려는 개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법의 체계와 관계 속에서 구성될 때에 법률의 효과가 나타나며,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법학박사(Ph.D)
- 논문접수일(2021.02.08), 심사개시일(2021.02.10), 게재확정일(2021.02.25)

보험사기특별법의 개정도 이러한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 보험법 내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4년 보험법 개정 당시에 논의되었으나 결국 미 개정되었던 보험사기 관련 내용들을 다시 입법 검토하여야 한다. 즉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 규정과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무효' 규정 그리고 '사기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규정들을 보험법에 입법하는 방안이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안으로 제안되었던 내용 가운데 '보험계약자 피해사실에 대한 보험회사 고지의무'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반환 규정'은 오히려 보험법의 편재 안으로 편입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들의 내용들에는, 보험회사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할 기준의 마련,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험회사 보고와 검사 및 시정조치 그리고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수사기관이 의뢰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과 평가비용의 부담방안,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및 과태료, 보험업계 종사자·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중처벌,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처벌의 경우 면허 취소권자에게 통보, 보험회사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실의 누설금지와 누설죄, 비밀유지의무 위반죄, 벌금형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 있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부분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 등 제재에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입법 제안되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와 방지 및 수사 그리고 보험사기 행위자 등의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체계라는 법체계상의 적합성과 법리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과의 체계의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체계와 보험업법이나 형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I. 서론

지난 2016년 3월 29일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손실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법률 제14123호)이 제정되었고,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보험사기를 예방함으로써 보험거래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의 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등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¹⁾ 또한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보험금을 노린 살인·방화 등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등²⁾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경제적 범죄이다. 이에 보험사기로부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동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1호에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동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이러한 보험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입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대로 그 효력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졌다.³⁾

그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동법의 제정 첫해인 2016년에 2건, 2017년에 2건, 2018년에 1건, 2019년에 3건으로 제20대 국회에서 총 8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그럼에도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또다시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들은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과 처벌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 1) 노명선,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의미와 운영과제”, 월간손해보험 2016-04월호, 손해보험협회, 2016.4. 13면 ; 한기정,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BFL 제5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2. 24면 ; MS DHARA JITENDRA CHUDGAR·DR. ANJANI KUMAR ASTHANA, “Life Insurance Fraud - Risk Management and Fraud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ing, Financial Services & Management Research Vol.2. No.5, May 2013, pp.100~109.
- 2) 김정철, “보험사기 범죄 유형에 따른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20. 24면 ; 양선희,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입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380면 ; 황지태·신의기·김지영·조성현, 보험범죄의 발생실태와 대책, 2016년도 법무연수원 연구용역보고서, 법무연수원, 2016.12. 4면 ;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解説—生命保險·傷害疾病定額保險, 有斐閣, 2010, 390~393頁.
- 3) 박제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기망행위의 적용대상과 보험사기죄 실행 착수시기에 관한 비판적 분석”, 경영법률 제30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326면 ; 송윤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4. 2. 24, 4면 ; 오병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12, 301면 ; 전지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10, 51~55면.

보험사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로서 제안되었다.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들의 각 사안들이 법체계상으로 적합하며 법리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계약의 일반법인 보험법의 체계와 관계 속에서 입법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법의 관계에서 법체계적으로 적합한 입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억제되지 못한다고 하여, 제기된 개별 문제들에 해당하는 법규정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계속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보험사기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험사기에 관련된 법체계를 올바르게 구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보험법 내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4년 보험법 개정 당시에 논의되었으나 결국 미개정되었던 보험사기 관련 내용들을 다시 입법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법 체계의 바탕 아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명칭과 같이 ‘특별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 등 제재에 실효성을 높이는 형사적 행정적 체계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에는 보험업법·형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갖추어 가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체계적 구조 아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제도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과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다루고, 보험사기 관련법 체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에 보험법상 보험사기 관련 규정의 입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개정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개별 내용들에 대한 법체계성과 입법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황현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KiRi 보험법리뷰 이슈분석 2019.12.16., 보험연구원, 2019. 12. 16, 6면.

II.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과 계속적인 개정 요구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과 그 이후의 상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보험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2010년 3,746억 원에서 2014년 5,997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동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에는 7,982억원, 2019년에는 8,80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적발인원도 2017년 83,535명, 2018년 79,179명, 2019년 92,538명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19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⁵⁾

위와 같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과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기의 적발금액과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기의 방지라는 동 법률의 실효성이 비판받고 있다.⁶⁾ 이에 그 동안 문제되었던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의 어려움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었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여러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속적으로 입법 상정되고 있다. 아직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는 없지만, 2016년~2020년의 20대 국회에서 8건 그리고 2020년의 21대 국회에 들어서 벌써 4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⁷⁾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안 발의와 제안된 개정의 내용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 이후 2016년에 2건, 2017년에 2건 2018년에 1건, 2019년에 3건으로 제20대 국회에서 총 8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5) 금융사기대응단, “2019년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 전년대비 10.4% 증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4.9.(목) 조간 <첨부> 2019년 보험사기 적발통계, 2~3면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035&no=158&s_title=보험사기&s_kind=title&page=1 : 2021.1.29. 최종검색).

6) 변원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효율적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2권 제2호, 단국대 법학연구소, 2018, 351면 ; 오병두, 앞의 논문, 302면.

7) 「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를 넘어가면서 자동 폐기 되었다.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찬성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이세미 기자, “잠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국회부터 언제 넘나’, 위키리크스한국, 2019. 12. 20,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72950> : 최종검색일 2020.1.29.).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지된 바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심의 중인 상태이다.

(i) 2016년 12월 5일 : 의안번호 [200410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⁸⁾ - 제20대 국회(2016~2020)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

- 동 개정안 제7조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3항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ii) 2016년 12월 20일 : 의안번호 [20044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⁹⁾ - 제20대 국회(2016~2020)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

- 동 개정안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2항·3항 「보험회사 전·현직 임직원의 보험사기 연루시에 1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 동 개정안 제13조의2 (시정조치) 「보험회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동 개정안 제15조의2 (과징금) 1항·2항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과징금 1억 원 이하 부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함」

(iii) 2017년 2월 2일 : 의안번호 [200538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욱의원 등 10인)¹⁰⁾ - 제20대 국회(2016~2020)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

8) 김승희의원 등 11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004109], 대한민국 국회, 2016.12.5.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O6O1X2L0F5D1L7Y2P1T4P8A6D3C7 : 최종 검색일 2021.1.31).

9) 김관영의원 등 10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004492], 대한민국 국회, 2016.12.20.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L6B1S2P2S0Z1M5Z4C3V1J4O3G0M0 : 최종 검색일 2021.1.27).

10) 정태욱의원 등 10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005388], 대한민국 국회, 2017.2.2.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X7S0H2R0C2J1E4E1K8X2V8O1Q8M0 : 최종 검색일 2021.1.28).

- 동 개정안 제6조의2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 「보험회사의 출연으로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동 개정안 제7조 (입원에 관한 의학적 의견 요청 등) 「보험사기방지기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재원 충당과 대통령으로 정함」

(iv) 2017년 4월 3일 : 의안번호 [200656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¹¹⁾ - 제20대 국회(2016~2020)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

- 동 개정안 제2조 (정의) 3호 「의료인등이란 의료기관종사자를 말함」
- 동 개정안 제8조의2 (의료인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제공) 「의료인등이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함」

(v) 2018년 2월 28일 : 의안번호 [201223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의원 등 10인)¹²⁾ - 제20대 국회(2016~2020)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

- 동 개정안 제6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3항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 동 개정안 제6조의2 (관련 자료의 요청 등)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요청권」

(vi) 2019년 1월 17일 : 의안번호 [201821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 등 10인)¹³⁾ - 제20대 국회(2016~2020)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

11) 김관영의원 등 10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4492], 대한민국 국회, 2016.12.20.,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L6B1S2P2S0Z1M5Z4C3V1J4O3G0M0 : 최종 검색일 2021.1.27).

12) 김한표의원 등 10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2233], 대한민국 국회, 2018.2.28.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Y8F0E2U2U8O1X6X5S2E3U5R6R9H9 : 최종 검색일 2021.1.26).

13) 김석기의원 등 10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8215], 대한민국 국회, 2019.1.17.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Y8F0E2U2U8O1X6X5S2E3U5R6R9H9 : 최종 검색일 2021.1.28).

- 동 개정안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vii) 2019년 5월 17일 : 의안번호 [202048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¹⁴⁾ - 제20대 국회(2016~2020)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
- 동 개정안 제8조 (보험사기죄) 2항 「보험설계사·손해사정인 등 보험업 종사자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 (viii) 2019년 8월 22일 : 의안번호 [202206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¹⁵⁾ - 제20대 국회(2016~2020)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
- 동 개정안 제4조의2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절차와 기준의 제정) 「보험회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조사업무 수행의 절차와 기준의 마련」
 - 동 개정안 제5조의2 (자료의 제공요청 등) 「금융위원회·금융감원원의 자료제공요청권」
 - 동 개정안 제12조의2 (보고와 검사)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보고·검사 및 시정조치」
 - 동 개정안 제15조의2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의 부과」

14) 김진태의원 등 10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020480], 대한민국 국회, 2019.5.17.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L9C0D5J1O7K1C0K3T5J0R2L7X5E5 : 최종 검색일 2021.1.25).

15) 이학영의원 등 10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22065], 대한민국 국회, 2019.08.22.,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P9P0M8R2P2L1G3Y1F3S2J0P3J9Y3 : 최종 검색일 2021.1.29).

(ix) 2020년 6월 30일 : 의안번호 [210119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¹⁶⁾ - 제21대 국회(2020~2024) 소관위원회 심사 중

- 동 개정안 제5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자료제공요청권」
- 동 개정안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동 개정안 제11조의2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와 기 지급한 보험금 반환」

(x) 2020년 7월 31일 : 의안번호 [210255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¹⁷⁾ - 제21대 국회(2020~2024) 소관위원회 심사 중

- 동 개정안 제8조(보험사기죄) 2항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 등에 대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 동 개정안 제11조의2 (보험금의 반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보험금 반환」

(xi) 2020년 12월 9일 : 의안번호 [210627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¹⁸⁾ - 제21대 국회(2020~2024) 소관위원회 심사 중

16) 이주환의원 등 11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22065], 대한민국 국회, 2020.06.30.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M0B0L6P3P0Y1M1S5H0X2O9S8H3S1 : 최종 검색일 2021.1.26).

17) 윤창현의원 등 13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102553], 대한민국 국회, 2020.07.3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T0T0R7R3H1Z1R4S3Z3A3E7F1J2M8 : 최종 검색일 2021.1.26).

18) 홍성국의원 등 15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106276], 대한민국 국회, 2020.12.09. 발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G0W1P2R0G1N1H6Q4O0C0U4O4A0Q3 : 최종 검색일 2021.1.26).

- 동 개정안 제4조의2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절차와 기준의 제정) 「보험회사의 전담조직 및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절차와 기준의 제정」
- 동 개정안 제5조의2 (자료의 제공요청 등) 「금융위원회의 자료의 제공요청 등」
- 동 개정안 제8조 (보험사기죄) 2항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 등에 대한 정한 형의 2분의 1 가중처벌」
- 동 개정안 제12조의2 (보고와 검사)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고와 검사 및 시정조치」
- 동 개정안 제15조의2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의무」

(xii) 2020.12.2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¹⁹⁾

- 제21대 국회(2020~2024) 소관위원회 심사 중

- 동 개정안 제4조의2 (보험사기행위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 등) 「보험사기행위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와 준수할 기준의 마련」
- 동 개정안 제5조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2항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증된 사실을 고지」
- 동 개정안 제5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요청권」
- 동 개정안 제5조의3 (보고와 검사)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고와 검사 및 시정조치」
- 동 개정안 제6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3항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사실 누설금지」
- 동 개정안 제7조 (수사기관의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등) 3항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
- 동 개정안 제7조의2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와 시정조치」

19) 김한정의원 등 10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61], 대한민국 국회, 2020.12.23.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Y0D1H2S2F3Y1D1X4T7L1Q3W9M6I5 : 최종 검색일 2021.1.28).

- 동 개정안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의 보험사기죄 기중처벌」
- 동 개정안 제11조의2 (보험금의 반환 및 보험계약의 해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보험금의 반환 및 보험계약의 해지」
- 동 개정안 제14조 (벌칙)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누설죄」
- 동 개정안 제15조 (과태료) 「보험금의 지급 지체 또는 거절 삭감한 보험회사의 과태료」,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Ⅲ. 보험사기 관련법 체계화의 필요성

1. 보험사기 관련 법체계의 구성과 관련 법률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 등 제재를 통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²⁰⁾ 동 법률은 보험계약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보험법(상법 보험편)의 체계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규정들은 보험법의 관계에서 법체계적으로 적합한 입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사기라고 예상되는 보험사고는 보험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 다툼은 사법 분야의 민사 문제와 공법 분야의 형사 및 행정 분야에서 동시에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²¹⁾

사법 분야의 민사 문제의 보험사기 분쟁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은 주로 보험금 청구와 보험회사의 면책 및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 그리고 보험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청구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법영역이다.²²⁾ 이에 대한 법해결은 가장 기본이

20) 김슬기,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연세법학 제27호, 연세법학회, 2016. 6, 68~69면.

21) 「다툼의 범위에 따른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며 분쟁 해결의 절차에 차이가 있다」(황현아·손민숙,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Ⅳ) - 보험분쟁과 법제, CEO Report 07호, KiRi 보험연구원, 2020. 9, 1면·6면).

22) 이상남,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한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방어체제 구축 방안”,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93~102 ; 황현아·손민숙, 앞의 논문, 1면.

되는 것이 「상편 보험편에 해당하는 보험법」이며,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각 보험회사들의 약관」·「민법과 기타 민사특별법」 등이 적용된다.

공법 분야의 형사·행정 분야의 보험사기 분쟁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은 보험사기의 범죄 구성요건과 수사 및 기소와 재판 그리고 형벌 등에 관련된 범영역과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과 제재 및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쟁송 등과 기타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관련된 범영역이다.²³⁾ 이에 대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여러 행정관련 규정과 형벌이 입법화되어 있으며²⁴⁾, 그 밖에 「형법」²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보험업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그런데 현행 보험법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에 대한 기본법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보험사기에 관련된 각종 제도들과 규정들을 입법화하려는 개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제기된 개별 문제들에 해당하는 법규정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계속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12월 23일에 제안된 ‘보험사기의 해지와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동 개정안 제11조의2) 그리고 ‘보험계약자 피해사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고지의무(동 개정안 제5조 3항)와 같이 보험법에서 입법되어야 할 사항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입법 제안되는 등 법체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험법에 보험사기에 대한 기본 규정을 두고 민사분쟁의 해결에 대한 규정들은 사법체제로 해결하게 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민사 부분을 제외한 형사분야와 행정분야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공법상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거 2014년 보험법 개정 당시에 보험사기에 관련된 여러 조항들에 대한 입법

23) 이성남, 앞의 논문, 103~111면 ; 황현아·손민숙, 앞의 논문, 1면.

24) 김유근, 주요 형사특별법의 법체계의 정비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7-AA-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12, 199~212면.

25) 「보험사기 및 그에 수반하는 살인이나 상해 등 범죄에 대한 기소 및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즉 보험사기죄 성립에는 살인,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그에 수반하는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상호 관련된다. 예를 들어,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보험사기죄도 유죄가 된다.」(황현아·손민숙, 앞의 논문, 6면).

개정의 논의가 있었다. 결국 이들 조항들은 모두 미개정되었으나, 오늘날 보험사기에 관한 보험법의 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입법 여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⁶⁾

특히 「최대선의성의 원칙」은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보험사기의 법체계상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2014년 당시에 입법 논의되었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정한 규정이나 보험료 납부 규정 및 보험금의 청구와 보험자 면책 조항 등은 보험사기의 법체계 구성에 기본이 될 수 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구성 검토

보험계약의 기본법인 보험법 체계의 바탕 아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그 명칭과 같이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 등 제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특별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사를 제외한 형사 및 행정 분야의 공법체계로 구성되었다.²⁷⁾ 즉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와 방지 및 수사 그리고 보험사기 행위자 등의 형사 처벌 및 행정제재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체계이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사와 보고 및 고발·수사의뢰,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수사의뢰, 금융감독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행정제재와 재판에 의한 형사처벌 등에 관련된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다.

첫째, 보험사기 행위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조사와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과정에서의 법체계 구성이다.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조사하고 그 근거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26) 양기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방향 - 보험사기 조사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 법률연구 통권 제77호, 법무부, 2017. 1, 221면 ; 이성남, 앞의 논문, 111~115 ; 이양복,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향, 강원법학 제52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17.10, 501면.

27) 「보험업법 등 행정분야의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의 특별법이라는 견해가 있다.」(양선희, 앞의 논문, 381면).

등을 할 수 있다(동법 제6조). 2020년 12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보험회사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할 기준의 마련’(동 개정안 제4조의2), ‘보험회사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실의 누설금지’(동 개정안 제6조 3항) 등은 이 부분의 법체계에 편입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기의 조사와 고발·수사를 의뢰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 2020년 12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요청권’(동 개정안 제5조의2),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 업무 또는 자산 사항의 보고와 검사 및 시정조치’(동 개정안 제5조의3) 등은 이 부분의 법체계에 편입 구성될 수 있다.

둘째, 수사기관은 보험회사나 금융감독당국이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 혹은 자체 수사한 사건을 조사하여 보험사기행위의 관련자들을 검거하여 기소하는 단계에서의 법체계 구성이다.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 2020년 12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수사기관이 의뢰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의 마련’(동 개정안 제7조 3항)은 이 부분의 법체계에 편입 구성될 수 있다.

셋째, 보험사기행위자와 관련자 및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의 단계에서의 법체계 구성이다. 2020년 12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금지 및 과태료’(동 개정안 제7조의2, 제15조 1항 2호), ‘보험사기죄 기중처벌’(동 개정안 제8조 2항), ‘보험회사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실의 누설죄’(동 개정안 제14조 1호), ‘비밀유지의무 위반죄’(동 개정안 제14조 2호) 등은 이 부분의 법체계에 편입 구성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내용은 보험사기와 관련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이 필요하다.²⁸⁾ 즉 보험업법·형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정합성을 갖는 체계가 갖추어야 한다. 특별법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 보험업법이나 형법 등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²⁹⁾

28) 황현아, 앞의 논문, 8면.

29) 김정철, 앞의 논문, 177~189면 ; 황현아·손민숙, 앞의 논문, 12~13면.

IV. 보험법상 보험사기 관련 규정의 입법화

1. 보험법 2014년 개정시 보험사기 관련 미입법 규정의 입법 재고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최대선의의 원칙

최대선의의 원칙(a Contract of Uberrima Fides)이란 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요건으로 한다는 의미이다.³⁰⁾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입법 근거이면서, 동시에 동 법률상 보험사기의 조사·방지·처벌에 대한 행위기준이 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방지·처벌 등 제재³¹⁾와 보험제도를 약용하는 보험사기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최대선의의 원칙은 그 의의가 두드러진다.

2008년 보험법(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최대선의성(utmost good faith)’을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보험법에 명문화하려 하였다. 동 개정안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및 최대선의의 원칙) 제2항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최대선의의 계약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정작 2014년 보험법 개정에서는 「최대선의의 원칙」을 입법화하지 못하였다.

당시 「최대선의의 원칙」이 미개정되어 입법하지 못한 것은 ‘최대선의의 원칙’의 개념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³²⁾, 구체적 보험분쟁의 해결에 일반 포괄적 조항인 ‘최대선의의 원칙’규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에 회의적 견해가 있었다.³³⁾ 또한 최대선의성이 오히려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30) 「최대선의의 원칙은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 MIA)에 입법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명규, “해상보험에서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 329~333면 ; 송호신, “2014년 보험법 개정시 제외된 미개정사항의 재검토”, 보험법연구 제12권 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12, 391~392면 ; H.N.Bennett, “Mapping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 law”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99, pp.179~180).

31) 김슬기, 앞의 논문, 68~69면.

32)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최대선의원칙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8, 107면.

33) 김선정, “2014년 보험법 개정에 대한 관견”, 경영법률 제24권 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103~106면. ; John Lowry & Phillip Rawlings, Insurance Law : Doctrines and Principles, 2nd. ed., Oxford, 2005, pp. 11~14.

비판 그리고 최대선의성을 대륙법 국가의 신의성실과 같은 의무로 해석하여³⁴⁾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⁵⁾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방지·처벌 등 제재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목적과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 및 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라는 본질에 비추어 볼 때에, 「최대선의의 원칙」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보험사기와 보험제도의 악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피해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보험 건전성이 무너지게 되는 등 보험제도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2016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동 법률의 근거와 기준의 토대는 보험계약의 일반법인 보험법의 「최대선의의 원칙」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 원칙이 입법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최대선의’라는 행위규범의 기준이 작동한다.³⁶⁾ 또한 관련 규정이 부족하거나 불비하여도 최대선의성을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계약의 무효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와 방지 및 처벌 등 보험사기 행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최대선의의 원칙은 보험계약의 대원칙이 되면서 동시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입법 근거로써 보험사기의 조사·방지·처벌 등 제재의 행위 기준이 될 수 있다.³⁷⁾ 따라서 2014년에 미입법되었던 「2008년 보험법 개정안 제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및 최대선의의 원칙) ① ... ②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보험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입법이 재고려되어야 한다.

34) 한창희,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험법개정의 관점, 창목출판사, 2009. 4, 28~29면; Malcolm A. Clarke, “Good Faith and Bad Blood in insurance Claims,” *14 South Africa Law Journal* 65, 2002, p75.

35) 김선정, “법무부 상법개정안 재론”, 비교법연구 제9권 1호,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2008. 10, 2002~2005면; 한창희, 앞의 논문, 34면; 木下孝治, 保險契約における情報隔差の是正と不正請求對策, 商事法務, No. 1808, 商事法務研究會, 2007. 08, 25, 13頁.

36) 송호신,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한 2008년 상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논총 제26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350면.

37) 송호신, 앞의 “2014년 보험법 개정시 제외된 미개정사항의 재검토”, 394면.

(2)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범죄행위로 보고³⁸⁾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1호에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보험사기의 개념과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기의 적발 실효성이 부족하며 보험사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³⁹⁾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법상의 정의는 ‘보험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보험사고의 내용 등을 과장하는 행위⁴⁰⁾」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학설상의 정의이다.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의2의 보험사기 관련 규정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만이 선언적으로 있을 뿐이다.

보험사기는 다양한 개념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 보험에 관련된 자들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험사기의 구체적 요건이나 효력에 대해 정해 놓은 규정은 없다.⁴¹⁾ 일부 보험약관에 의해 사기계약의 취소나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나 보험법 가운데 보험사기의 개념과 요건 및 효력에 대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법 내에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료 청구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보험사기의 법체계 구성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미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료 청구의 내용’은 2008년 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의 과잉적용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이익침해 우려와 일반 민법상의 계약과 다른 규율 등의 이유로 2014년 보험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한 바 있다.⁴²⁾

38) 김슬기, 앞의 논문, 68~69면 ; 변원규, 앞의 논문, 335~354면.

39) 양기진, 앞의 논문, 213~214면 ; 양지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2호, 계명대 사회과학연구소, 2020.08, 62면.

40) 김정철, 앞의 논문, 11~12면 ; 박세민, 앞의 논문, 327면.

41) 송호신, 앞의 “2014년 보험법 개정시 제외된 미개정사항의 재검토”, 395면 ; 유주선, “보험사기의 문제점과 예방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18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269면 ; 최세련,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경영법률 제21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99면.

따라서 2014년에 미입법되었던 2008년 보험법 개정안 「제655조의2 (사기에 의한 계약)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절한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험법 체계 안에 포함시켜 입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은 이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됨을 확정하고 있다.⁴³⁾ 그러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며, 이 계약을 무효로 하는 보험법상의 법률 규정은 의미 있는 입법이다.⁴⁴⁾ 다만 보험사기에 의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 보다 ‘취소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⁴⁵⁾ 그러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은 범죄행위이며, 이는 반사회적 불법행위로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보험사기의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이를 유형화⁴⁶⁾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은 보장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이 속성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이라는 사실을 안 때까지는 비록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절한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⁴⁷⁾

- 42) 송호신, 앞의 “2014년 보험법 개정시 제외된 미개정사항의 재검토”, 391~399면 ; 이택길,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법제 2008년 4월호, 법제처, 2008. 4, 128면.
- 43) 문준섭·김규동, “보험사기 실태 및 원인 : 공모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년 4호, 한국경찰학회, 2018, 27~30면 ; 양선희, 앞의 논문, 382면 ; 이정민·조홍중,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비교형사법학회, 2015, 148~158면.
- 44) 맹수석,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보험법연구 제11권 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188~189 ; 野口夕子, “保險事故招致とそのサンクション(- 民事上および刑事上の詐欺に關する一考察 -)”, 保險學會誌 第569号, 日本保險學會, 2000, 50頁.
- 45) 대한변호사협회,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8065호)에 대한 의견”, 법률안의견서 자료, 2008.4.21, 6/17면 ; 이택길, 전개논문, 132면 ; 대법원 2017.4.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 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53380 판결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165 판결.
- 46) 김은경,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고찰 - 보험사기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 인암법학 43권, 인암법학회, 2014. 1, 846면~872면 ; 양기진, 앞의 논문, 222면. 「19대 국회 박대동 의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의안에는 보험사고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시기, 내용들에 관련된 허위가공, 피해가공, 고의에 의한 재산적 손괴,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인적 피해유발 등 세부적 유형들이 열거되어 있으나 동 법률의 입법시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최관, “보험범죄예방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한 연구 비판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한국행정학회, 2018.12, 1804면)
- 47) 송호신, “2008년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보험건전성을 위한 정책의 비판”, 법과정책연구 제9집

(3) 사기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2014년 보험법 개정 당시에 보험사기 관련 미입법된 다른 사항으로는 사기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규정이 있다.

그 내용은 2008년 보험법 개정안 「제657조의2(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사기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뜻을 통지하여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손해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면이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손해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면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기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당시에 미입법된 이유로는 과잉적용과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침해에 대한 염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사기의 행태와 범위의 모호성 및 보험자 면책에 대한 가치 판단의 어려움 등이었다.⁴⁸⁾ 그러나 고의나 위장에 의한 보험사고 혹은 불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나 과다청구, 서면이나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 대리진단 혹은 약물복용에 의한 진단 그리고 진단서의 위조 혹은 변조 등의 행위 등 이른바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도 보험법상 처리해야 한다고 볼 때에⁴⁹⁾, 보험법에 동 조항을 입법화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⁵⁰⁾

또한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연하며,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9. 12, 957면 ; 三村雅彦, “新た視点での保険金不正請求対策”, 損害保険研究 第80卷 第1号, 損害保険事業總合研究所, 2018. 5, 142頁.

48) 한기정, 앞의 논문, 33면.

49) 장우영,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 영리보험과 사회보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2, 482~487면 ; E.R.Hardy Iva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4nd ed., Butterworths & Co. Publishers Ltd., 1979, p.435 ; Aschenbach/Ransiek/Rönnau/Kölbel, *Handbuch Wirtschaftsstrafrecht*, 4.Aufl., 2015, 1.Kapitel Rn.305; Lackner/Kühl, *Strafgesetzbuch mit Erläuterungen, Kommentar*, 28.Aufl., 2014, §265, Rn.1. ; 中西正明, “英國保險約款における詐欺的請求條項”, 傷害保險契約の法理, 有斐閣, 1992, 339頁 ; 野口夕子, 前掲論文, 54頁.

50) 이성남, 앞의 논문, 111~112면.

이는 2020년 6월과 7월 그리고 12월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 제안 내용 가운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반환의 논의에도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중 보험법으로 편입해야 할 사항

(1) 보험계약자 피해사실에 대한 보험회사 고지의무의 부과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동법 제5조 제1항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제2항에는 보험사고의 조사를 이유로 한 보험금의 지급 지체나 거절 및 삭감 지급 금지 등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조에는 보험사기의 의심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 의뢰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8월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 15조의2」와 2020년 12월 23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정의의원 등 10인) 제5조 3항」에서 ‘보험계약자 피해사실에 대한 보험회사 고지의무의 부과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개정안들의 제안이유를 보면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이 확인된 보험계약자에게 할증보험료 환급 관련 고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⁵¹⁾

2019년 9월 11일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의 비중을 감안하여 고지의무의 필요성 인정하는 검토 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즉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1)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18.7.13.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21525&no=98&s_title=&s_kind=title&page=12 : 최종검색일 2021. 1.30).

2016년 45.0%, 2017년 43.9%, 2018년 41.6%, 2019년 43% 등 매년 40% 이상이며, 적발인원도 2016년 64.3%, 2017년 63.2%, 2018년 62.0%, 2019년 57.8% 등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⁵²⁾는 점을 고려할 때에 관련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기행위 관련한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타당하다. 다만 동 규정은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는 내용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험법의 보험사기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입법하는 것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보험법의 법체계에 부합한다.

(2)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기 지급 보험금 반환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사기 행위가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⁵³⁾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 규정도 없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에 대한 범죄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회사가 기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려면 보험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절차가 별도로 제기되어야 한다.⁵⁴⁾ 즉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⁵⁵⁾

52) 보험사기대응단, “2019년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 전년대비 10.4% 증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4.9.(목) 조간, 별첨 2019년 보험사기 적발통계 3면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23035&no=158&s_title=보험사기&s_kind=title&page=1 : 2021.1.29. 최종검색).

53) 이용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2020. 9., 5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M0B0L6P3P0Y1M1S5H0X2O9S8H3S1>.

54) 「환수소송에서는 보험회사가 대부분 승소하나, 상대방이 무자력인 경우에는 실제 환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황현아·손민숙, 앞의 논문, 6면).

55) 양선희, 앞의 논문, 403면.

보험사기는 대부분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실제 보험사기범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 이른바 보험사기 관련 보험금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⁵⁶⁾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환수율을 살펴보면, 2016년 14.2%, 2017년 15.5%, 2018년 13.9%, 2019년 17% 등 환수율이 연례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환수를 통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2020년 6월 30일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주환의원 등 11인) 제11조의2」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반환, 2020년 7월 3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윤창현의원 등 13인) 제11조의2」 ‘보험금의 반환, 2020년 12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정의원 등 10인) 제11조의2」 ‘보험금의 반환 및 보험계약의 해지’의 규정이 연이어 제안되었는데, 이들은 현재 제21대 국회(2020~2024)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반환에 관한 위 2020년 6월 7일 12월의 3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해지 및 보험금 환급 등을 규율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에 대하여 관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사기의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사기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사기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기를 통한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안으로 이해된다.⁵⁷⁾

그렇지만 이러한 조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안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 보험법에 편입되어야 할 내용이다. 위의 개정안들에서 이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입하려는 것은 법체계에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다. 즉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56) 이용준, 앞의 보고서, 10면.

57) 김정철, 앞의 논문, 185면 ; 양선희, 앞의 논문, 404~405면 ; 이용준, 앞의 보고서 1~2면.

반환에 대한 내용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다는 보험법에 두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다.

그렇지만 동 규정은 2014년 보험법 개정 당시에 제외되었던, 보험사기에 관련된 보험법 조항들, 즉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과 보험사기계약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보험법상의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입법 사항이 될 것이다.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의 보험사기의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보험법에는 보험사기의 범위를 넓게 보아 비록 보험금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사기의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는 예컨대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⁵⁸⁾라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기 지급 보험금 반환규정은 보험법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V.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내용별 입법 검토

1. 보험회사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할 기준의 마련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조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6조).

문제는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⁵⁹⁾, 조사와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으로 인해 보험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 초기부터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즉 보험사고의 조사 과정 또는 조사 명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58) 松田眞治, “保険金詐欺請求への法的制裁”, 生命保険論集 第193号,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2015.12, 226頁.

59) 양기진, 앞의 논문, 215~216면 ; 양지훈, 앞의 논문, 63면.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 부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남발된다면 합리적인 보상을 청구한 보험계약자들이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염려 때문에 보험회사에 정당한 보험금마저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8월 23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학영의원 등 10인)」과 2020년 12월 9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등 15인)」 그리고 2020년 12월 23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정의원 등 10인)」은 ‘보험사기 행위의 방지 그리고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 마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위 개정안들의 제안이유는 보험사기 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전담조직이나 보험사기 행위의 예방과 조사업무를 수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⁶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와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권익 침해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의심자와 선의의 보험금 청구권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019년 9월 11일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의 절차와 기준의 마련을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관련 업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⁶¹⁾고하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⁶²⁾, 동 조직의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60) 「현행 보험업법 제3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회사,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며, 보험사기행위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63조에서는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양지훈, 앞의 논문, 74면).

61) 조용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험회사 내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마련 등>,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2019. 9. 11, 1면.

62) 「미국의 경우 주요 민영보험회사에 ‘보험사고특별조사팀(SIU) 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州) 차원에서 특정 보험계약 인수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SIU 설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혐의가 명백한 지는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적인 조사를 받게 하고, 조사업무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⁶³⁾ 또한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 예컨대 보험금의 지급 지체를 예방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 보험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 자료제공요청권의 도입

(1) 보험사기 관련 자료의 제공요청권

자료제공요청권의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등의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련 국민건강보험 기타 공공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요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금융당국의 조사를 위한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자료의 제공요청권」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표 의원 등 10인)」에서 처음으로 ‘관련자료의 요청 등의 조항을 규정하려 하였다(동 개정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2019년 8월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5조의2」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자료의 제공요청권’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이 두 건의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고발 혹은

있는 부서의 설립을 의무화한다」(김정철, 앞의 논문, 188면 ; 신의기·황만성,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A-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76면 ; 최인섭·이천현·오경식·안경욱·이경렬,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2-16, 2002.12, 589~590면).

63) 양선희, 앞의 논문, 407면.

수사 의뢰할 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⁶⁴⁾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를 통한 정보수집 만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다.⁶⁵⁾ 즉 관련 보험기관들에 대한 자료의 공유 요청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험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한 직무 활동에 어려움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간보험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공요청권의 도입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동 개정 내용은 2020년 6월 30일 제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주환의원 등 11인) 제5조의2」에서 ‘자료제공의 요청’조항으로 발의되었으며, 2020년 12월 9일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등 15인) 제5조의2」에, 그리고 2020년 12월 23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정의원 등 10인) 제5조의2」에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요청권’조항으로 제안되어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라본다면,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요청권 신설을 통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료제공요청권의 도입이 필요하다.⁶⁶⁾ 즉 관련 보험기관들에게 보험사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⁶⁷⁾

이러한 자료제공요청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이러한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법률 체계상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법률 체계에 불 때에 동 규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내에 입법화하여야 하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64) 황현아, 앞의 논문, 5면.

65) 양선희, 앞의 논문, 406면.

66) 이양복, 앞의 논문, 500면 ; 이용준, 앞의 보고서, 5면.

67) 이용준, 앞의 보고서, 6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관련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황현아·손민숙, 앞의 논문, 1면).

당해 보험계약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여겨 이를 범죄로 보았다면 이는 수사하는 단계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의 수사단계가 아닌 보험사기 의심의 단계에서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라는 넓은 범위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자료제공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볼 때에 2018년 2월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표의원 등 10인)」 당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그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⁶⁸⁾ 즉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들의 제공을 요청하는 일을 허용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자료의 제공요청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범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그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9일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등 15인) 제5조의2 제1항 후단」에는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20년 12월 23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제5조의2」에서 그 후단의 내용이 다시 삭제되어 발의되었다.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한정⁶⁹⁾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자료제공요청권의 주체

2019년 8월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표의원 등 10인)」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자료제공요청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통일할 것을 검토 의견으로 내놓았다. 이는 그 당시 개정안의 내용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 6월 30일 개정안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모두에 자료제공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자료제공요청권의 행사주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의 자료제공요청 목적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것으로 동일하다.

68) 황현아, 앞의 논문, 6면.

69) 조용복, 앞의 보고서, 7면.

또한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자에게 자료제공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중복적인 자료 제공을 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제공요청권의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3조(권한의 위탁)에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결국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아 직접 자료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볼 때에 2020년 12월 9일 개정안과 동년 12월 23일 개정안 제5조의2 (자료의 제공요청 등)에는 자료요청의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3.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고와 검사 및 시정조치 그리고 과징금 부과

(1)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고와 검사 및 시정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고 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동법 제5조 2항, 제15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그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 또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보험회사를 검사 및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의무위반 행위의 확인 등에 필요한 보고와 검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제13조의2」와 2019년 8월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12조의2」에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에 대한 내용이 발의되었다. 21대 국회에 와서도 2020년 12월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등 15인) 제12조의2」와 2020.12.2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정 의원 등 10인) 제5조의3」에서 계속 유사한 내용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동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와 보험사기 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나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 또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고,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확보되게 된다.

2019년 8월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학영의원 등 10인)」에 대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⁷⁰⁾에서는 ‘보험회사의 보고와 감사의 요구 및 시정조치의 근거는 보험업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법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에, 동 규정은 보험업법상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다(보험업법 제133조), 따라서 보험업법 제133조의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의 내용과 체계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반영한 입법안이 2020년 12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정의원 등 10인) 제5조의3」조항이다. 즉 보험업법 제133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검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입법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보여진다.

(2)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경우, 보험회사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동법 제5조 2항, 제15조).

70) 조용복, 앞의 보고서, 7면.

이는 보험사기죄의 형벌 5천만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2016년 12월 2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제15조의2」에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 대해 1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병과하게 되는 과잉제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체계상으로 볼 때에도 보험업법상의 과징금과 중복되는 중복제재의 문제 및 침해최소성 위배 등의 문제가 있어」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⁷¹⁾ 즉 현재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이나 삭감 등 축소지급을 기초서류 위반으로 보고 해당 보험계약 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⁷²⁾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를 제재한다면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동 조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면 해결될 것이다. 1억원 상당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것이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제도의 실익이 크다고 보여진다.

4.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 1항과 2항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⁷³⁾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1) 전상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17, 7면 ; 황현아, 앞의 논문, 9면.

72) 박세민, 앞의 논문, 349면.

73)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실무상 고발 또는 피해신고에 해당하며, 수사의뢰공문은 피해신고서에 해당한다.」(오병두, 앞의 논문, 310면 ; 전지연, 앞의 논문, 35면).

그런데 2018년 2월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표 의원 등 10인) 제6조 3항」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수사결과 통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수사결과 통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다고 본 것이다.

보험사기의 방지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보험사기의 적발과 수사 및 처벌의 현황 및 보험금의 환수 규모 등에 대한 통계에 기반을 둔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매년 보험사기의 적발 건수와 액수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 이후의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대한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⁷⁴⁾ 물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수사를 의뢰한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 통보 대상이 정식 고소·고발의 건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기소율과 판결 결과 및 유죄판결 이후의 보험금 환수금액 등에 대한 통계로 정확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국가정책적인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보험사기와 관련한 모든 수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단순히 수사결과 통보만으로도 보험사기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지도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보험감독원의 적발통계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계, 재판부의 보험사기 판결 결과에 대한 통계, 유죄판결 이후 민사상 환수금액 통계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모든 통계에 대한 결과를 각 기관마다 통지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74) 황현아·손민숙, 앞의 논문, 7면·13면.

5. 수사기관이 의뢰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과 평가비용의 부담 방안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사기관이 의뢰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의 마련

보험사기의 전형적 예로 불필요한 입원 및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포함된다.⁷⁵⁾ 이에 따라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의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 기간 및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⁶⁾ 또한 그 의뢰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⁷⁷⁾

이에 대하여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 등으로 심사된다면 그 의학적 전문성과 관계없이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하지 않을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고 이는 성실하게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던 보험계약자의 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박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내게 되었다⁷⁸⁾.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정의원 등 10인) 제7조 3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발의하였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할지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논리에 따른 경제적 기준에 의해 입원적정성 심사⁷⁹⁾가 이루어져 입원적정성의

75) 박형식·박호정,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에 대한 연구”, 정보보안 논문지 제15권 제6호, 한국융합보안학회, 2015. 10, 79~87면; 양선희, 앞의 논문, 408면; 조효민, 보험사기 판례정리집: 과다입원, 금융감독원, 2017, 83면.

76) 「종래에 수사실무에서 관행으로 활용되었던 건강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입법화한 것이다」(김선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8, 96면; 오병두, 앞의 논문, 311면; 이양복, 앞의 논문, 501면).

77) 「수사기관의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통보는 형사소송법상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화’라는 사실조회의 일종으로,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 도 수사기관이 사실조회를 요청할 경우 심사평가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 없다」(양지훈, 앞의 논문, 65면; 오병두, 앞의 논문, 311면).

78) 양기진, 앞의논문, 218면.

79)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에 대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할 만한 전문성이 없으며, 또한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거나 시행하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후적 심사를 진행한다」(김선협, 앞의 논문, 97면; 최관, 앞의 논문, 1805면).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 때에도 보험사기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입원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자를 진료하거나 검사를 해보지 아니하고 적정 입원일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보험사기행위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피보험자인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건강권 및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⁸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2020년 12월 23일 개정안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은 공적보험의 급여비용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공단 부담진료비를 심사하고 자동차 보험 심사 업무 등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이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⁸¹⁾ 오히려 입원적정성 심사는 의학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독립적인 보험사기 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판단하게 하거나, 의료분쟁에 따른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의료전문가 단체를 통한 사실조하나 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 심사하도록 하는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2) 입원적정성 심사의 평가비용 부담 방안

또 다른 입법 논의로는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때에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다. 2016년 12월 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승희 의원 등 11인)」에는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때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입법 제안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정태욱 의원 등 10인)」에서는 ‘민간 보험회사들의 출연으로 보험사기방지 기금을 설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재원 조달 조항의 내용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

80) 김은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적용”, 상사법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6, 163면 ; 양지훈, 앞의 논문, 65면.

81) 양지훈, 앞의 논문, 64면.

심사평가원에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 심사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그 수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6년 12월 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제7조 제3항」에 신설 제안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에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⁸²⁾ 심사에 대한 재원을 조달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료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심사기구인데, 주로 공적보험의 급여비용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보험 사기범죄의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 보험 심사의 업무 등을 위탁 처리하며 수수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데, 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않는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와 처벌 등을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에 대해서도 비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라는 수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재원의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범죄 수사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데, 보험사기를 범죄행위로 보고 범죄수사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 이른바 ‘수사상 감장’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보험사기의 수사 진행에 따른 비용 부분은 일반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⁸³⁾이 타당하므로 유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만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2017년 2월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정태욱 의원 등 10인)」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재원 조달 마련을 위해 입법 조항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고(동 개정안 제6조의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충당 처리한다(동 개정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라고 하였다. 이른바 민간

82) 양선희, 앞의 논문, 408면

83) 황현아, 앞의 논문, 7면.

보험회사들의 출연으로 보험사기방지 기금을 설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 재원으로 조달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기의 조사와 방지 및 처벌은 결국 보험회사의 회사 이익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보험회사들이 아무런 비용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필요한 재원을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바탕을 둔 개정안의 내용이다.

위의 두 발의안에 대하여 당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병합 검토하였고, 동 검토보고서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수사절차의 일환인 감정 등과 유사하고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 부담도 민간보다는 수사기관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국가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기 수사의 실질적 수혜자인 보험회사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⁸⁴⁾이라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기금조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된다. 첫째는 보험사기의 이해 당사자인 보험사 측의 자금으로 비용이 처리된다면, 간접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쳐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⁸⁵⁾, 둘째는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은 일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보험회사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실의 누설금지과 누설죄

2020년 12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정의원 등 10인) 제6조 3항」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였거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등을 포함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발의하였다.

또한 동 개정안 제14조 제1항 1호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였거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송부한 사실을 보험계약자등을 포함한 타인에게 누설한 보험회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개정 조항을 제안하고 있다.

84) 황현아, 앞의 논문, 9면.

85) 황현아, 앞의 논문, 7면.

보험회사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에 대한 누설금지 규정의 취지는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실이 누설된다면, 해당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 제안 사항이다. 보험사기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사실이 누설되면 피의자들에 의해 범 죄의 증거들이 훼손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보험사기의 입증이 매우 어렵게 된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출연한 보험기금을 유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 하는데,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과 대응의 책무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⁸⁶⁾ 따라서 보험사기의 고발과 수사의뢰의 누설행위는 보험회사의 책무에 위배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만 누설금지의 책무 위배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 해당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범죄행위로 정한 것은 다소 형사 법의 법리상 다소 무리한 입법이며, 법체계상으로 맞지 아니하다. 오히려 보험회사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제재를 가하도록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5조의 과태료의 경우와 같이 행정벌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7.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및 과태료

2020년 12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정의원 등 10인) 제7조의 2에는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 금지의 규정을 신설 제안하고 있다.

이는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을 통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안 내용이다.

즉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규정의 위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동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제115조 1항

86) 양기진, 앞의 논문, 221면.

2호』에서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에서 논의되었던 보험사기 예비죄⁸⁷⁾와도 그 법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보험계약자가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더라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는 것으로 미수죄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기 예비죄를 신설하지는 주장⁸⁸⁾과 비슷하다.

보험사기의 방지와 처벌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된 목적이므로,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가 보험사기죄의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험사기의 알선·광고는 아직 그로 인한 법익 침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법익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예측성만을 이유로 재산범인 보험사기의 형벌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며,⁸⁹⁾ 이를 대신하여 행정제재인 과태료의 형태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본다.

8. 보험업계 종사자·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와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적발되고 있다. 또한 보험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며, 이는 보험사기가

87) 특집 좌담회, “형법상 보험사기죄의 신설에 관한 찬반론”, 인권과정의 통권 제447호, 대한변호사협회, 2015, 35~45면. 「독일은 보험사기예비행위를 처벌하는 ‘보험남용죄’가 적용된다」(양선희, 앞의 논문, 397면 ; 유주선, 앞의 논문, 290면).

88) 노명선, 앞의 논문 ; 양선희, 앞의 논문, 403면 ; 전지연, 앞의 논문, 43~44 ; Fischer, StGB, Kommentar, 63.Aufl., 2016, § 265, Rn.17; Tiedemann, Wirtschaftsstrafrecht, BT, 3.Aufl., 2011, Rn.489; Schönke/Schröder/Eser/Perron, StGB, Kommentar, 29.Aufl., 2014, § 265, Rn.2.

89) 김슬기, 앞의 논문, 75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기 행위의 적발이 어렵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⁹⁰⁾

이에 따라 보험사기의 조직화·지능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와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입법 검토되고 있다.

「보험업계 종사자·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20일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0인)」에서 ‘전·현직 보험회사 임직원의 보험사기 연루시 가중처벌조항이 처음 제안되었다. 또한 2019년 5월 17일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에서 ‘보험업계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조항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건의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안들은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목적의 실현에 한계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016년 12월 20일 개정안 제11조 2항 및 3항에는 「보험사기는 ... 보험계약에 지식이 높은 ... 전·현직 보험사 직원이 연루된 경우에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처음에는 「보험회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안이었다. 그렇지만 생명이나 신체적 법익의 침해가 없는 순수 재산범죄에 대해 이득액에 관계없이 그 하한을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었고⁹¹⁾, 당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 “브로커, 의사, 병원, 설계사 등은 제외하고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를 야기”⁹²⁾한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2019년 5월 17일 개정안에서는 보험업계·의료기관·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으로 그 가중처벌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즉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

90) 김정철, 앞의 논문, 45~50면.

91) 황현아, 앞의 논문, 6면.

92) 황현아, 앞의 논문, 9면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함]이라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위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나, 또다시 제21대 국회인 2020년 6월 30일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이 제안되어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발의되었다(동 개정안 제11조 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즉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후 2020년 7월 31일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3인)」이 발의되어 ‘보험사기죄 가중처벌’조항이 발의되었는데, 여기에서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관계자들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더욱 무겁게 정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 9일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5인)」에서 보험사기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2020년 12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한정의원 등 10인)」에도 일반 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보험사기죄 가중처벌에 대한 개정안이 또 다시 발의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보험금의 산정·지급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 전문지식 등과 관련되어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려울 ... 보험금 누수로 보험가입자 보험료를 인상시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 ...」을 들고 있다. 또한 동년 7월 31일 개정안에서도 「보험설계사 및 병의원·정비업체 관계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로부터 발생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전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 공모·방조하여 더욱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9일 개정안에서 「... 일반인에 비해 윤리의식이 강해야 함에도 ...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중처벌을 통해 보험사기행위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업계 종사자와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조직화 전문화된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⁹³⁾

그렇지만 2016년 12월 20일 개정안에 대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 「보험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통계적·실증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보험업계,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관련성이 그렇게 높은 것인지 아래의 표를 살펴볼 때에 다소 회의적이다. 보험사기 전체 혐의자 가운데 위 3개 직종의 종사자 비율은 2019년 기준 4.2%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회사원(보험외)	15,011	18.1	18,740	22.4	16,607	21.0	17,040	18.4
회사원(보험업)	350	0.4	92	0.1	69	0.1	108	0.1
무직·일용직 (전업주부 제외)	11,691	14.1	10,004	12.0	7,689	9.7	8,766	9.5
전업주부	8,829	10.6	8,124	9.7	8,200	10.4	9,987	10.8
기타일반자영업	6,366	7.7	6,816	8.2	3,830	4.8	2,895	3.1
학생	3,840	4.6	3,750	4.5	3,198	4.0	3,837	4.1
판매직 종사자	1,712	2.1	3,160	3.8	1,471	1.9	1,930	2.1
운수업 종사자(차량)	3,546	4.3	3,031	3.6	2,999	3.8	3,571	3.9
운수업 종사자(차량외)	264	0.3	469	0.6	421	0.5	638	0.7
기타서비스직종사자	2,766	3.3	2,404	2.9	2,384	3.0	3,309	3.6
요식업 종사자	1,529	1.8	1,673	2.0	1,409	1.8	1,668	1.8
병원 종사자	1,086	1.3	1,408	1.7	1,270	1.6	1,233	1.3
공장(제조업)	1,912	2.3	1,291	1.5	1,663	2.1	1,901	2.1
모집종사자(보험업)	1,019	1.2	1,055	1.3	1,250	1.6	1,600	1.7
모집종사자(보험외)	61	0.1	54	0.1	105	0.1	160	0.2
건설/창고업종사자	993	1.2	1,062	1.3	1,146	1.4	1,448	1.6
정비업소 종사자	907	1.1	1,022	1.2	1,116	1.4	1,071	1.2
교육관련종사자	830	1.0	703	0.8	652	0.8	975	1.1
공무원(교사제외)	436	0.5	373	0.4	346	0.4	562	0.6
군인	394	0.5	523	0.6	291	0.4	295	0.3
유흥업소종사자	249	0.3	182	0.2	158	0.2	150	0.2
운동선수	89	0.1	52	0.1	49	0.1	58	0.1
기타	19,132	23.0	17,547	21.0	22,856	28.9	29,336	31.7
전 체	83,012	100.0	83,535	100.0	79,179	100.0	92,538	100.0

(출처: 금융감독원, 2019년 보험사기 적발통계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20.4.8)

93) 이용준, 앞의 보고서, 5면.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뿌리뽑기 위해 보험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⁹⁴⁾

그렇지만 보험사기에 이들 업종의 종사자들이 일부 관여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고, 이들 직업·신분에 따른 특별신분범으로서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직업·신분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려면, 일반 사기에 비해 범행 가능성과 피해 범위, 범죄 예방의 필요성, 범행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⁹⁵⁾ 이들을 가중하여 처벌해야 할 입법정책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⁹⁶⁾ 즉 다른 범죄에서의 특별신분범의 처벌 수준의 비교, 가중처벌을 하는 법리적 근거 및 일반 예방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⁹⁷⁾

9.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처벌의 경우 면허 취소권자에게 통보

보험사기 범죄는 그 특성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해 가중 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험사기 범죄의 감소를 위해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이외에 별도로 취소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안이다.⁹⁸⁾

94) 이용준, 앞의 보고서, 9면

95) 황현아, 앞의 논문, 5면.

96) 이용준, 앞의 보고서, 8면 ; 황현아, 앞의 논문, 6면.

97)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종사자·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특수 신분범으로 보아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양형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형벌법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본다. 즉 현행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으로, 「1. 법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위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다. 따라서 양형의 측면에서, 이를 고려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며 적절하다.」(이용준, 앞의 보고서, 5면)

98) 황현아, 앞의 논문, 6면.

2017년 4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제8조의2」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는 경우, 면허 취소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이라는 조항을 입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해당 의료인과 보험사기 범죄 행위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지침」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주무관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이미 운영 중임⁹⁹⁾이므로 중복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특정 신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제재의 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며,¹⁰⁰⁾ 이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볼 때에 굳이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입법 내용으로 보여진다.

10. 벌금형 상한선의 상향조정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조사·방지 및 처벌을 위하여 2016년 3월 제정되었다. 동 법 제8조 보험사기죄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업·신분을 불문하고, 보험사기의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한 형벌이다. 또한 상습범과 미수범을 처벌하며,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의 병과 등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¹⁰¹⁾

99) 황현아, 앞의 논문, 9면

100)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된다」(황현아·손민숙, 앞의 논문, 6면).

101) 「보험사기죄의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제11조), 이는 일반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 거의 같다」(양기진, 앞의 논문, 215~216면 ; 양지훈, 앞의 논문, 66면).

이에 대해 기존의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비하여 볼 때에 큰 차이가 없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별도의 처벌을 하는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¹⁰²⁾ 즉 보험사기죄에 대한 현재의 형벌이 미약하다고 본다.¹⁰³⁾ 적발되는 상당수의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치는데 현재의 벌금형은 보험사기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보험사기의 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2019년 1월 17일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김석기 의원 등 10인)」에서는 벌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하는 '벌금형 상한'을 높이도록 동 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2019년 당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입법 후 불과 3년이 경과하여, 벌금형을 상향할 경제 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 벌금형 상한인 2천 만 원과의 법체계상의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 검토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¹⁰⁴⁾

사실 보험사기죄의 형량 논의 앞서 오히려 보험사기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¹⁰⁵⁾ 즉 "현행 형법에 사기죄 등을 규율하고 있고,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통해 그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데, 별도의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규율대상 및 보호법의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며, 이는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는 주장이다.¹⁰⁶⁾

어찌되었든 보험사기죄의 벌금을 상향하도록 하는 2019년 개정안의 취지는 동

102) 김솔기, 앞의 논문, 80면 ; 전지연, 앞의 논문, 41면 ; 양기진, 앞의 논문, 215면 ; 양지훈, 앞의 논문, 66면 ; 오병두, "앞의 논문, 307면 ; 최관, 앞의 논문, 1805면.

103) 「공적보험 관련 법률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128조 1항(벌칙)과 제130조(양벌규정), 고용보험법 제116조 2항(벌칙)과 제117조(양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1항(벌칙)과 제128조(양벌규정) 등 부정한 방법의 보험금 수급 등에 대한 형벌 규정들이 흩어져 있으나, 1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법정형이 너무 약하여 강제력 행사가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김정철, 앞의 논문, 15~16면·182면.

104) 이용준, 앞의 보고서, 5면.

10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폐지와 형법규의 형법전 편입과 절차법규의 일반법으로의 편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오병두, 앞의 논문, 315~316면).

106) 최창보, "[기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병원신문 칼럼·기고, 2019.06.07.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852>>.

죄의 벌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¹⁰⁷⁾으로 높임으로써 보험사기 범죄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¹⁰⁸⁾ 그렇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보험사기죄를 설치한 이유는 단지 형량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은 단면적 시각이다. 보험사기의 피해가 크고 즉시 적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사기죄 성립이 불확실했던 종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바가 크다.

벌금형의 형량을 높임으로써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보험사고방지특별법의 취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시각은 적절하지 못하다.¹⁰⁹⁾ 또한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의 보험사기죄는 형법상의 사기죄의 형량에 비해,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상습범과 미수범 그리고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더욱 가중 처벌하고 있어 이미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량을 올려야 할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VI. 결 론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보험금 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 보험계약을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할 때에 이를 차단·방지·처벌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와 함께 보험 건전성의 확보와 다수 선량한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였다.¹¹⁰⁾

이에 지난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예방하며,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계약의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손실비용을

107) 「1억이라는 벌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한 것이다. 이는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추도록 하였다.」

108) 변원규, 앞의 논문, 352면.

109) 황현아, 앞의 논문, 6면.

110) 野口夕子, 앞의 “保險事故招致とそのサンクション(-民事上および刑事上の詐欺に關する一考察-)”, 50頁.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법률 제14123호)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 시행된지 4년이 흐른 현재에도 보험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의 조사와 방지 및 처벌이라는 동법률의 실효성이 비판받으며, 동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국회에 총 1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가운데 8건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2020년 발의된 4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동 개정안들의 쟁점들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보험사기에 관련된 법체계에 맞게 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계약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보험법의 체계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규정과 개별 조항들은 보험계약의 일반법인 보험법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입법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행 보험법 내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2014년 보험법 개정 당시에 논의되었으나 결국 미개정되었던 보험사기 관련 내용들을 다시 고려하여 보고 이들 보험사기 관련 조항들의 입법을 먼저 선행하여야 한다. 즉 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요건으로 한다는 최대선의의 원칙 규정과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본다는 규정 그리고 사기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규정들을 보험법의 체계 속에서 입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안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안 가운데 보험계약자 피해사실에 대한 보험회사 고지의무의 부과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반환 규정은 오히려 보험법의 편재 안으로 편입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들의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안의 규정은 보험사기 행태의 조사·방지·처벌 등 제재에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였다. 즉 「보험회사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조사업무와 관련 준수기준」의 경우, 보험사고조사를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예방하며, 위반시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사업무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된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라볼 때에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에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고와 검사 및 시정조치」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그 업무나 자산을 보고하거나 보험금 지급 실태 또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며,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룰 때에 시정조치의 근거가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의 경우, 수사결과와 통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다.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누설금지」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에 대비한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검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의 경우, 심사기준이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근본적으로는 입원적정성 심사를 독립된 전문기구나 의료전문가 단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의 비용 부담」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보험사 측의 자금으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는 보험사기의 방지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금지를 정하고 그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보험업계 종사자·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기중 처벌」의 경우, 이들 직업·신분에 따른 특별신분법으로서 기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마찬가지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처벌의 경우 면허 취소권자 통보」의 경우, 특정 신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제재의 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며, 이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하지 아니하여 되는 입법이다.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침해에 대한 보호」의 경우, 1억원 상당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에는 과잉제재의 문제와 보험업상 중복제재 그리고 침해최소성 위배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게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보호에 도움된다고 본다. 「벌금형 상한선의 상향조정」의 경우, 이미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에 비해 보험사기죄에 비해 기중 처벌하고 있는데 더욱 기중 처벌하여 형량을 올려야 할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보험사기특별법의 규정들은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보험업법·형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보험사고와

연관되어 있는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와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의 관계가 어우러질 수 있는 정합성을 갖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체계와 보험업법이나 형법 등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록]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2020년 말까지 국회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들

(i) 2016.12.05. : [200410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② (생략) <신 설>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한 경우 그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20대 국회 (2016~2020)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ii) 2016.12.20. : [20044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생략) ② <u>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u> <신 설> <신 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험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험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u> 제13조의2(시정조치) <u>금융위원회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u>	20대 국회 (2016~2020)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현 행	개 정 안	현 재
<신 설>	<p>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5조의2(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iii) 2017.02.02. : [200538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욱의원 등 10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신 설>	<p>제6조의2(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를 통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기방지기금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보험회사 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제7조(입원에 관한 의학적 의견 요청 등) ① ----- -----입원 기간 및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검토가 ----- -----	20대 국회 (2016~2020) 입기 만료로 자동 폐기

현행	개정안	현재
<p>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 ----- <u>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u> -----</p> <p><삭제></p> <p>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사기방지금으로 충당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수행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iv) 2017.04.03. : [200656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의료인등”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제8조의2(의료인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제공) 제8조의 보험사기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인등이 처벌 받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의료인등과 범죄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2016~2020) 입기 만료로 자동 폐기

(v) 2018.02.28. : [201223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0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②(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의뢰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관련 자료의 요청 등)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0대 국회 (2016~2020) 입기 만료로 자동 폐기

(vi) 2019.01.17. : [201821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의원 등 10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 -----1억원----- -----.	20대 국회 (2016~2020)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vii) 2019.5.17. : [202048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제8조(보험사기죄)(생략) <신설>	제8조(보험사기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원	20대 국회 (2016~2020)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viii) 2019.8.22. : [202206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신 설>	제4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조사 절차와 기준의 제정)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직원이 보험사기행위의 방지 및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대 국회 (2016~2020)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신 설>	제12조의2(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및 보험계약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 또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사기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ix) 2020.6.30. : [210119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p><신 설></p> <p>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 처벌) ①·②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대상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제9조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포함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3.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원 <p>제11조의2(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보험계약자등이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p>	<p>21대 국회 (2020~2024) 소관위 심사중</p>

현 행	개 정 안	현 재
	② 보험회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청구한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2020.07.31. : [210255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3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제8조(보험사기죄) (생략) <신설>	제8조(보험사기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원	21대 국회 (2020~2024) 소관위 심사중
<신설>	제11조의2(보험금의 반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죄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xi) 2020.12.9. : [210627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5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p><신 설></p>	<p>제4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조사 절차와 기준의 제정)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임직원이 보험사기행위의 방지 및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5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21대 국회 (2020~2024) 소관위 심사중</p>
<p>제8조(보험사기죄) (생략)</p>	<p>제8조(보험사기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신 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원</p>	
<p><신 설></p>	<p>제12조의2(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p>	

현 행	개 정 안	현 재
<p><신 설></p>	<p><u>기행위의 조사 및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u></p> <p><u>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제15조의2(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등을 고지하여야 한다.</u></p>	

(xii) 2020.12.23. : [210686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

현 행	개 정 안	현 재
<p><신 설></p>	<p><u>제4조의2(보험사기행위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전담조직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현 재
<p>제5조(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①·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그 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5조의3(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 또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시정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1대 국회 (2020~2024) 소관위 심사중</p>
<p>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② (생략)</p>	<p>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현 재
<p><신 설></p> <p>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② (생략)</p>	<p>③ <u>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료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들을 포함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③ <u>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제7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① <u>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② <u>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8조(보험사기죄) <u>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제8조(보험사기죄) ① <u>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상 지위 또는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1.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소속 보험중개사를 포함한다)</p>	

현행	개정안	현재
<p><신설></p> <p>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설></p> <p><신설></p>	<p>2.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 보조인</p> <p>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p> <p>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원</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제11조의2(보험금의 반환 및 보험계약의 해지) 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보험회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p> <p>-----.</p> <p>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였거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송부한 사실을 보험계약자등을 포함한 타인에게 누설한 보험회사</p> <p>2.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p>	

현행	개정안	현재
<p>제15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신설></p> <p><신설></p> <p>② (생략)</p>	<p>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p> <p>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p> <p>2.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p> <p>② (현행과 같음)</p>	

참고문헌

- 고명규, “해상보험에서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
- 김슬기,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연세법학 제27호, 연세법학회, 2016. 6.
- 김선정, “2014년 보험법 개정에 대한 관건”, 경영법률 제24권 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_____, “법무부 상법개정안 재론”, 비교법연구 제9권 1호,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2008. 10.
- 김선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8.
- 김유근, 주요 형사특별법의 법체계의 정비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7-AA-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12.
- 김은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적용”, 상사법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6.
- 김은경,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고찰 - 보험사기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3권, 안암법학회, 2014. 1.
- 김정철, “보험사기 범죄 유형에 따른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20.
- 노명선,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의미와 운영과제”, 월간손해보험 2016년 04월호, 손해보험협회, 2016.4.
- 맹수석,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보험법연구 제11권 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 문준섭·김규동, “보험사기 실태 및 원인 : 공모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권 4호, 한국경찰학회, 2018.
- 박세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기망행위의 적용대상과 보험사기죄 실행 착수시기에 관한 비판적 분석”, 경영법률 제30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 박형식·박호정,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에 대한 연구”, 정보보안 논문지 제15권 제6호, 한국융합보안학회, 2015. 10.
- 변원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효율적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2권 제2호, 단국대 법학연구소, 2018, 351면.

- 송윤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4. 2. 24.
- 송호신, “2014년 보험법 개정시 제외된 미개정사항의 재검토”, 보험법연구 제12권 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12.
- _____,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한 2008년 상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논총 제26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 _____, “2008년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보험건전성을 위한 정책의 비판”, 법과정책연구 제9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9. 12.
-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최대선의원칙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8.
- 신의기·황만성,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A-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양기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방향 - 보험사기 조사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7호, 법무부, 2017. 1.
- 양선희,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입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양지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2호, 계명대 사회과학연구소, 2020.08.
- 오병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12.
- 유주선, “보험사기의 문제점과 예방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18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2.
- 이성남,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한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방어체제 구축 방안”,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 이양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향, 강원법학 제52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17.10.
- 이정민·조홍중,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비교형사법학회, 2015.
- 이택길,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법제 2008년 4월호, 법제처, 2008. 4.

- 이용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2020. 9.
- 장우영,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 영리보험과 사회보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2.
- 전상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17.
- 전지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10.
- 조용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험회사 내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마련 등>,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2019. 9. 11.
- 조효민, 보험사기 판례정리집 : 과다입원, 금융감독원, 2017.
- 특집 좌담회, “형법상 보험사기죄의 신설에 관한 찬반론”, 인권과정의 통권 제447호, 대한변호사협회, 2015.
- 한기정,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BFL 제5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2.11.
- 한창희,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험법개정의 관점, 창목출판사, 2009. 4.
- 황지태·신의기·김지영·조성현, 보험범죄의 발생실태와 대책, 2016년도 법무연수원 연구용역 보고서, 법무연수원, 2016.12.
- 황현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KiRi 보험법리뷰 이슈분석 2019.12.16., 보험연구원, 2019. 12. 16.
- 황현아·손민숙,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V) - 보험분쟁과 법제, CEO Report 07호, KiRi 보험연구원, 2020. 9.
- 최관, “보험범죄예방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한 연구 비판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한국행정학회, 2018.12.
- 최세련,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경영법률 제21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 최인섭·이천현·오경식·안경옥·이경렬,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2-16, 2002.12.

Aschenbach/Ransiek/Rönnau/Kölbel, Handbuch Wirtschaftsstrafrecht, 4.Aufl., 2015, 1.Kapitel
Rn.305; Lackner/Kühl, Strafgesetzbuch mit Erläuterungen, Kommentar, 28.Aufl.,
2014.

MS DHARA JITENDRA CHUDGAR·DR. ANJANI KUMAR ASTHANA, “Life Insurance
Fraud - Risk Management and Fraud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ing, Financial Services & Management Research Vol.2. No.5, May 2013.

E.R.Hardy Iva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4nd ed., Butterworths & Co. Publishers
Ltd., 1979.

Fischer, StGB, Kommentar, 63.Aufl., 2016, § 265, Rn.17; Tiedemann, Wirtschaftsstrafrecht,
BT, 3.Aufl., 2011, Rn.489; Schönke/Schröder/Eser/Perron, StGB, Kommentar,
29.Aufl., 2014.

H.N.Bennett, “Mapping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 law”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99.

John Lowry & Phillip Rawlings, *Insurance Law : Doctrines and Principles*, 2nd. ed., Oxford,
2005.

Malcolm A. Clarke, “Good Faith and Bad Blood in insurance Claims,” *14 South Africa Law
Journal* 65, 2002.

木下孝治, 保険契約における情報隔差の是正と不正請求対策, 商事法務, No, 1808, 商事法
務研究会, 2007. 08, 25.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険法解説—生命保険·傷害疾病定額保険, 有斐閣, 2010.

三村雅彦, “新たな視点での保険金不正請求対策”, 損害保険研究 第80巻 第1号, 損害保険事
業総合研究所, 2018. 5.

松田眞治, “保険金詐欺請求への法的制裁”, 生命保険論集 第193号, 生命保険文化セン
ター, 2015.12.

野口夕子, “保険事故招致とそのサンクション(- 民事上および刑事上の詐欺に關する一考
察 -)”, 保険學會誌 第569号, 日本保険學會, 2000.

中西正明, “英國保險約款における詐欺的請求條項”, 傷害保險契約の法理, 有斐閣, 1992.

<Abstract>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and the Systematization of Insurance Act

Song, Ho Shin*

On March 29, 2016, the Special Act on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No. 14123) was enacted, and it has been in effect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The Act was enact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policyholders, etc. by preventing insurance fraud and to reduce social loss costs by establishing a transaction order for insurance contracts. However, more than four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surance fraud has not decreased, and the amount of damage is increasing significantly.

Accordingly,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is the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was criticized, and a revision of the Act was reque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in 2016, a total of 12 amendments to the Act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21. The contents of these amendments are a syste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s, to prevent and punish insurance frauds with systematic and intelligent characteristics, and to minimize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holders that may occur during the investigation of insurance fraud.

Despite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the reason why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does not show any effect such as the suppression of insurance fraud is because it does not harmonize well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Professor, Ph.D. in Law.

in the insurance law system. That i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been legislated in the framework of the Insurance Act, which is the general entity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the provisions and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ed Fraud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when it is organized within the general law framework of insurance contracts, and amendments to the Act should be addressed in this light.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no regulations on insurance fraud within the current insurance law. Consequently, the amendments to the Insurance Act 2014 should be reviewed in legislation for insurance fraud, which was discussed but was not amended. In other words, the maximum good-will rule that requires a highly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provision that invalidates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egulations on fraudulent claims and claims for the return of insurance payments are enacted in the insurance law. In other words, the maximum good-will rule that requires a highly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provision that invalidates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egulations on fraudulent claims and claims for the return of insurance payments are enacted in the insurance law.

In addition, among the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ed Fraud, the imposition of insurance company's notice obligation on insurance policyholder damages,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s due to insurance fraud, and return of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publication of insurance law.

At the same time, the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re as follows : Establishing standards to comply with the establishment and investiga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in insurance companies, introducing the right to request data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porting and inspection and corrective action, prohibition of investigation and leakage, etc.

Most of these amendments were valid for legislative reasons and

legal reasons in that they increased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such as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In addition, the system must be consistent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surance fraud. In other word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revised to ensure systematic consistency with relevant laws such as insurance industry law and criminal law.

Key Words :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insurance fraud, Insurance Law, a Contract of Uberrima Fides,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Right of request for data provision, a crime of insurance fraud, aggravated punishment, Hospitalization adequacy tes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